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19509 |
|----------|-------|

발의연월일 : 2026. 6. 25.

발 의 자 : 이주영 · 이준석 · 천하람  
윤재옥 · 김선민 · 조은희  
김미애 · 황명선 · 주호영  
박준태 · 이진숙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취학 전 아동 및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을 위하여 예능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에 대해서는 특별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교육비의 100분의 15를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하여 주고 있음.

최근 우리 사회는 급격한 도시화와 디지털 환경으로의 전환으로 인해 아동·청소년의 생활 양식이 실내 중심으로 고착화되면서 복합적인 보건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이를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에 우수야외활동 프로그램 인증제도의 근거를 신설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세제혜택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18세 미만의 아동을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우수야외활동 프로그램으로 인증 받은 야외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하여 지

급한 교육비를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3항제1호).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1950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4제3항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의 아동을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우수야외활동 프로그램으로 인증 받은 야외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학원에 지급하거나 직계비속 등이 제2호라목에 따른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가. ~ 마. (생략)

<신설>

2. 3. (생략)

④ ~ ⑪ (생략)

-----  
-----  
-----  
-----  
-----  
-----  
-----  
-----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과제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의 아동을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우수야외활동 프로그램으로 인증 받은 야외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3. (현행과 같음)

④ ~ ⑪ (현행과 같음)